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[2024. 3. 1.기준]

순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1	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제16조(관리감독자) / 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/ 제22조(산업보건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선임 또는 지정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: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 업무수행 - 관리감독자: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 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: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지도·조언(전담인력의 경우 다른 업무 수행이 금지) 	500만원 이하 과태료
2	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시간 - 정기 안전보건교육: 비사무직(12시간/반기), 사무직(6시간/반기) - 관리감독자 교육: 연간 16시간 이상 - 채용 시 교육: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시간, 4시간, 8시간 이상 - 특별교육: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2시간, 8시간, 16시간 이상 	500만원 이하 과태료,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3	제34조(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	500만원 이하 과태료
4	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(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) 	500만원 이하 과태료
5	제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·부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·시설·물질에 대한 경고, 지시·안내표지 등을 설치 또는 부착 시행규칙 별표 6~9 참조 (종류와 형태, 설치 부착장소, 색도기준 등) 금지표지 / 경고표지 / 안내표지 / 지시표지 	500만원 이하 과태료, 1개소당 50만원 이하 과태료
6	제38조(안전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-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그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방지 -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대한 위험 방지 - 전기·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방지 - 추락·붕괴·낙하·비래에 대한 위험 방지 - 굴착·하역·벌목·조작·운반·해체·중량물 취급 등에 대한 위험방지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7	제39조(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- 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- 온·습도, 근골격계부담작업,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- 방독·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8	제40조(근로자의 준수사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함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) 	300만원 이하 과태료
9	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됨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근로자 사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유/무선 보고 	은폐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 보고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
10	제62조(안전보건총괄책임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 포함)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	500만원 이하 과태료
11	제63조(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-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	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
12	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시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및 위생시설 설치 및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·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·내용등의 조정 	500만원 이하 벌금
13	제65조(도급인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제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, 안전조치 여부 확인 - 화학물질을 제조·사용·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·분해·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- 반응기·중류탑·배관·저장탱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-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	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 벌금
14	제93조(안전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, 그 이후 2년마다 실시(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)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15	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학물질 등 취급 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근로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실시 	500만원 이하 과태료
16	제115조 (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 실시 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17	제119조(석면조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석면 조사 실시 	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, 5000만원 이하 과태료
18	제122조(석면의 해체·제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석면해체·제거 업자가 해체·제거 하여야함 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19	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 실시 반기 1회 실시 /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시 년 1회 실시 - 작업환경 측정 결과는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함.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0	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- 상시근로자(관계수급인 포함)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	1,500만원 이하 과태료
21	제129조(일반건강검진) 제130조(특수건강검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건강검진- 사무직 2년 1회,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검진-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고열 등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 (6개월 ~2년 1회) 배치전건강검진- 신규채용, 작업전환 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	1,000만원 이하 과태료
22	제164조(서류의 보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등의 서류는 일정기간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	300만원 이하 과태료